

의안번호	2219620
의 퇴 인	유상범 의원
회 답 일	2026.7.3.
추계번호	26B31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u>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u>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u>노동관계 당사자</u>”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u>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한다)의 불일치</u>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의무규정
2	안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u>사업장을 점거하는</u>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삭 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제1항)	의무규정
		<삭 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제2항)	의무규정
		<삭 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	의무규정
		<삭 제>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81조(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제3항 신설) 1. 개인의 의사에 반해 파업 참가를 강요하거나 참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합원,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3. 위법한 쟁의행위 또는 폭력·파괴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강요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의무규정
5	안 제82조(구제신청)	사용자 또는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사용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84조(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u>구제명령</u> 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u>관계 당사자</u> 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u>관계 당사자</u>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5항)	재량규정
8	안 제90조(벌칙) 제	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u>제81조제1항, 제3항</u>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규정
9	안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u>제42조제2항</u> ,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제2호)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대상(제5호) － 현행법에 따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함 －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과 관련하여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경영권 등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	• 미대상 － 현행법은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개정안은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생산 기타 주요 시설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4	안 제81조(부당노동행위)	—	• 미대상 -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란, 개인의 의사에 반해 파업 참가를 강요하거나 참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합원,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등¹⁾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82조(구제신청)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6	안 제84조(구제명령)		
7	안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8	안 제90조(벌칙) 제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²⁾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9	안 제91조(벌칙)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에 따라 쟁의행위나 파업으로 인한 대체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부과 규정이 삭제될 경우 벌금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재정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곤란

1) 개정안에 따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란, ①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의 의사에 반해 파업 참가를 강요하거나 참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합원,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임금

2. 상세 사유

- (안 제43조) 현행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쟁의행위나 파업으로 인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쟁의행위나 파업으로 인한 대체근로가 허용되므로 이로 인해 대체근로가 실현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대체근로 여부와 규모, 대체근로 형태 및 임금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공무원 및 교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필수)공익사업³⁾으로 지정되어 쟁의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③위법한 쟁의행위 또는 폭력·파괴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강요하는 행위, ④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의미함

- 2)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 3)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 4)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안 제82조~제85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⁵⁾를 금지하면서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물량이 증가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발생 규모와 이로 인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건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는 이로 인한 신규 채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근로감독관의 정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고, 조직 및 정원의 확대는 공무원에 대한 인력운용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5) 안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③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개인의 의사에 반해 파업 참가를 강요하거나 참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합원,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3. 위법한 쟁의행위 또는 폭력·과괴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강요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